귀농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귀농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세제, 복지, 사업 등 여러 분야의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이 농촌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이주를 완료하고 정착할때까지의 모든 생활정보와, 세제혜택, 요금감면, 교육지원, 학자금지원, 자금지원, 물품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귀농인 1
1. 귀농 결정하기 4
1.1. 귀농인 이해하기 4
1.1.1.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4
1.2. 귀농에 대해 알아보기 5
1.2.1. 귀농정보 수집 6
2. 귀농 준비하기 8
2.1. 농지 준비하기 8
2.1.1. 농지취득자격증명 8
2.1.2. 농지매매 10
2.2. 집 준비하기 11
2.2.1. 주택의 건축과 농지전용 11
2.2.2. 주택임대차 계약 13
2.3. 영농관련 교육받기 14
2.3.1. 각종 영농교육 정보 14
3. 귀농인 지원 받기 16
3.1. 주거지원 16
3.1.1. 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16
3.2. 영농지원 20
3.2.1. 농업창업자금 지원 20
3.2.2. 농지취득세 감면 및 농업기계 자금 지원 22
3.2.3. 인력 지원 23
3.3. 생활지원 24
3.3.1. 교육 지원 24
3.3.2. 보험료 등 지원 25
3.4. 청년후계농 지원 28
3.4.1. 청년후계농 선발 28
3.4.2.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사항 29

1. 귀농 결정하기

1.1. 귀농인 이해하기

1.1.1.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농업인이 되려고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귀농인입니다.

귀농인의 개념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개념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어인, 귀촌인과는 구별됩니다.

귀어인의 개념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의 개념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어업인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과 그렇지 않은 “귀촌인”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콘텐츠는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내용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1.2. 귀농에 대해 알아보기

1.2.1. 귀농정보 수집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체크리스트

귀농 전 철저한 준비

▪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귀농 준비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가이드-귀농귀촌가이드 참조).

- (귀농정보 수집)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족과의 충분한 의논) 가족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배 작물 선정) 귀농인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 (영농기술 습득)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 (정착지 선정) 자녀교육 등 생활 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 조건이나 농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찾고 결정합니다.
- (주택 및 농지 구매) 귀농 시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후 최소 3~4곳을 비교 후 선택합니다.
- (영농계획 수립) 농산물 생산부터 수익 발생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귀농에 대한 각종 정보

< 귀농 관련 정보제공 기관 >

구분	내용	제공기관
지자체 지원	지자체별 지원정책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https://www.greendaero.go.kr/)
	지자체별 사회복지정책	
작물 재배	재배 적합지	흙토람 (https://soil.rda.go.kr/)
	작목별 농작업 일정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작목 종합정보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농산물 소득정보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교육	귀농귀촌 맞춤형교육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https://www.greendaero.go.kr/)
	온라인교육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오프라인 교육정보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https://www.greendaero.go.kr/)
주택 및 농지	농지	농지은행 (https://www.fbo.or.kr)

2. 귀농 준비하기

2.1. 농지 준비하기

2.1.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함)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 농지의 개념과 농지취득 자격
>
> - "농지"란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 ※ 농지의 개념 및 농지소유의 자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환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교환·분할·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00조에 따라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 **Q.**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여건상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1만 제곱미터 안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
>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본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4항).

> ※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2. 농지매매

농지매매를 준비합니다.

농지 확인

▪ 매수인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②).

▹ 매수하려는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 토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확인

▪ 매수인은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작성방법 및 해설-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①).

▹ 대리권은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위임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합니다(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토지매매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 소유권 이전과 인도
- 계약의 해제
- 그 밖의 특약사항
- 날짜 및 서명날인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그 밖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 울산지방법원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계약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민원-생활 속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등기의 효력

▪ 매매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담은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제1항, 제3항).

▪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전단).

> ※ 농지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농지취득』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집 준비하기

2.2.1. 주택의 건축과 농지전용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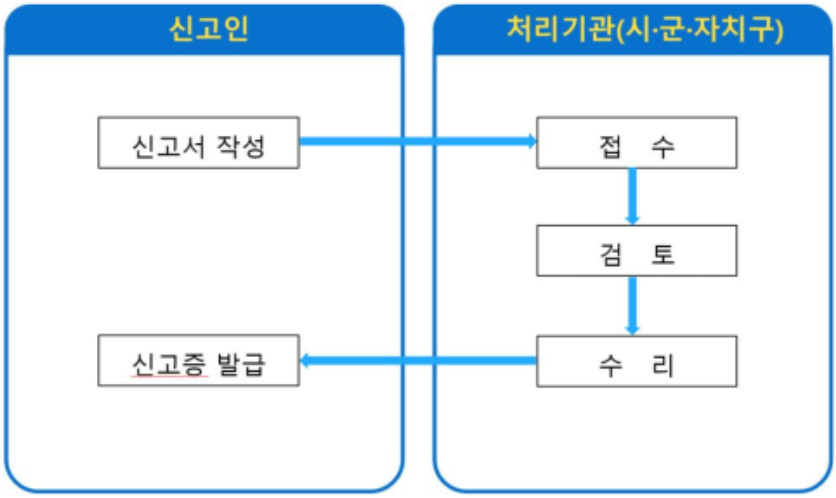
농지전용 신고

▪ 원칙적으로 농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는 세대주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세대당 66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 제1호).

-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농지전용 신고의 절차

<농지전용 신고 절차도>



▪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 농지전용신고서
-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 안에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농지전용신고증을 내주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주택을 건축합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민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 주택 건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용과 인허가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알림소식-자료실-농촌주택설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주택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및 등기부 확인 등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서 지번, 소유권 변동, 압류사항, 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1항).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https://www.moj.go.kr/moj/index.do) 법무정책서비스-법무/형사사법-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인도”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을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 보증금 보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농촌 빈집정보**
>
> **Q.**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농촌의 빈집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A.**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빈집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빈집정보를 문의하여 빈집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귀농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자료실-관련기관정보-전국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영농관련 교육받기

2.3.1. 각종 영농교육 정보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인 전문역량 및 정책지원 교육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품목별 전문기술 등의 전문역량 교육과 농업기계, 취업·창업 등의 정책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인 교육 분류 체계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역량	농업경영	농생명산업 및 진로, 농업경영 융복합, 브랜드 및 디자인, 유통, 정보화, 공감·소통대화능력 등
	품목별 전문기술	식량, 채소, 과수, 특작, 축산, 환경, 곤충 등
정책지원	농업기계	스마트농업, 농업기계
	취·창업 교육	

< 출처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집합교육-농업인교육 >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내용 및 일정, 수강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ttps://hrd.rda.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각종 귀농귀촌 관련 교육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아카데미, 귀농귀촌 심화교육, 농업일자리 체험교육 등 귀농인과 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교육정보-온라인교육).

※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인과 귀촌인 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교육정보-온라인교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귀농귀촌 관련 교육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귀농귀촌 관련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교육정보-오프라인교육-지자체귀농귀촌교육).

※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교육정보-오프라인교육-지자체귀농귀촌교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귀농인 지원 받기

3.1. 주거지원

3.1.1. 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귀농주택 구입자금, 신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

▪ 주택·대지 구입, 신축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을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 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이며,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함]에는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5면 참조).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의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2면 및 14면).

신청방법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9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등→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등→시·군) ⇨ **창업심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등)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등) ⇨ **사후관리**(시·군, 농협)

<출처: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8면>

※ 귀농주택 구입자금, 신축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상시 거주(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내용

▪ 위 감면대상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취득세의 추징

▪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주택 소유자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 소유자의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신청방법

▪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귀농주택 소유자는 다음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제103조 및 별지 제83호서식).

-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기간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통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농업인 주택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 "농업인 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본문).

1.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위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다만, 위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 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함)

※ 부지면적을 적용할 때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해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3. 위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구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업인 주택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제38조제6항제3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

>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3.2. 영농지원

3.2.1.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등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사업대상자

▪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구 분	내 용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함].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을 포함함].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인이 되려고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5~8면 참조).

구 분	내 용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재촌 비농업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① (전입기한) 해당 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기한 연장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을 세대당 3억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4면 참조).

신청방법

▪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9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 그 밖에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농협은행 및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2.2. 농지취득세 감면 및 농업기계 자금 지원

농지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 귀농인 및 귀촌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이하 "귀농일"이라 함)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 귀농인의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 및 귀촌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6항).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취득세의 추징

▪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 및 귀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8항·제9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 추징)

※ 농지취득세 감면 및 추징 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시·군 재무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농기계 구입 및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농기계 임대

▪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계 임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2항).

3.2.3. 인력 지원

영농활동이 곤란한 귀농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2026년 기준 2016. 1. 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8,800원/일)가 지원되며, 30%(25,200원/일)는 이용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신청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자녀지원 시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자녀지원>´)

▸ 진단서(상해진단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녀로 인한 영농도우미 신청일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농도우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합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3.3. 생활지원

3.3.1. 교육 지원

농촌출신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원)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본인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일정, 대상,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농은 대학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참조).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 1. 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6. 1. 1. 이후 출생자)

※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공증 비용은 장학생 개인 부담)

▹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지원내용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신청 및 선발절차



<출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 청년창업농 장학금의 신청기간, 대상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보험료 등 지원

귀농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 제7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다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2조 및 제3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50,350원/월(기준소득월액 1,060,000원)이 지원됩니다[『2026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국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외국국적자 포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호).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본인이 부담할 세대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22/100이 경감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

>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 농업인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 및 농기계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2항,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의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농기계종합보험[『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 농기계종합보험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기계 손해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은 120% 안으로 한정합니다[『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계약자당 위 담보에 대한 보험료의 70%를 지원합니다[『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4면].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4. 청년후계농 지원

3.4.1. 청년후계농 선발

영농경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선발사업

▪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면].

사업대상자

▪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사람입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8면].

신청자격 및 요건

▪ 청년후계농 선발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면~3면].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인 사람 [다만, 39세 이전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 교육과정에 선발된 사람은 수료 후 다음 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영농경력	총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특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3면~4면].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사람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사람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사람

> ※ 청년후계농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3.4.2.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사항

청년후계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5면].

▪ 영농정착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5면].

▪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5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 (12개월)	100만원 (12개월)	90만원 (12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 (12개월)	90만원 (12개월)	0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 (12개월)	0	0

사용용도 및 지급방법 등

▪ 지급받은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6면].

▪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6면].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10면~19면].

1. [독립경영 이행]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의무교육과정 이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정착지원금 수령기간 동안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필수과정 미이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2개월 중단되고, 선택과정 미이수 시에는 이수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생산품목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의무 자조금 품목에 대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기간의 80%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미가입 시 다음 연도 정착지원금 지급이 1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4. [경영장부(회계기록 및 영농일지) 기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 및 제출해야 합니다(방문 제출 불필요).

※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정지되며, 지급 정지 후 경영장부 재작성 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만, 일시정지 3회 이상일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5. [영농계획 이행]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영농계획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없이 영농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차감 및 사업대상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6.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행위를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 휴경,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

√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고, 위반 전 지급된 지원금은 월할로 계산해 환수합니다.

7. [성실신고] 청년후계농의 선발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선발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된 정착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거짓 작성 시점부터 최종 지급 시점까지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고,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된 다음 1개월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8.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의무 및 성실 사용]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영농정착지원금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청년후계농 자격이 박탈되며, 지급된 영농정착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지급 중단, 지급 일시 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9. [의무영농기간 준수]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의무영농기간 중에는 경영주로서 독립경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의무영농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다면 환수 유예 또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10. [정책자금 성실 사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한 사람은 반드시 지원 목적에 따라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자금 회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청년후계농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내용, 지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에게는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이 우대됩니다.

농지지원

▪ 청년후계농에게는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이 지원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7면].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청년후계농이 희망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발 시 우대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7면].

▪ 청년후계농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이 우대되며, 보증심사가 간소화 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7면].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청년후계농은 선정 연차에 따라 단계별로 영농교육이 제공됩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청년후계농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농업교육 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청년후계농의 농림사업 연계 및 각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